



삼척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54호

2022. 11. 25.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7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178호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 4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1420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 삼척시 공고 제1439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변경(안) 열람 공고 ----- 12
- 삼척시 공고 제1440호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 삼척시 공고 제1442호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2-17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1. 25.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광태리 61-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299-20	20221125	신규부여	20090626	구7번국도 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 활용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주소	번지	주소	번지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평태리 61-5	계	1건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299-20	20221108	신규부여	20090626	구7번국도 연결구간으로 기존도로명활용	

삼척시 고시 제2022 - 178호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1. 25.

삼척시장

- 고시일 : 2022. 11. 25. (금)
- 고시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 고시내용 : 삼척시 도로구간 변경 1건 (조서 및 위치도 참조)
- 도로명의 부여·변경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 의견 수렴한 날부터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0일 이내	14일 이상	30일 이내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10일 이내

<변경의 경우>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서면 동의 받은 날로부터 (서면 동의 생략 포함)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미만)	서면 동의 만료일부터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 변경 내용 및 절차	30일 이내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결과 통보

-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 변경 및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사용할 수 없음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 위원회의 심의 등 서면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 지적정보부서(☎033-570-39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위치도

조서	도로명	도로 위계	관할행정 구역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동일 도로명	변경 사유
	동안로 (1차종속구간)	로	미로면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m)				
				사둔리 235-6	사둔리 134-1	539	20	86-1 → 86-54	없음	기초번호가 없는 도로구간에 1차 종속구간 생성



위치도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 서면 동의 절차 생략.

삼척시 공고 제2022-1420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삼척시장

삼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매년 증가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 및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처우개선을 통한 관련 업무의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료업무 등의 수당 추가지급 근거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가축방역 업무와 동물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 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게 의료업무수당 지급(월 50만원)

3.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11일까지 작성하여 삼척시장(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회계과
 - 2) 전화 : 033-570-3276
 - 3) 팩스 : 033-570-3135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 / 공고 / 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2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영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 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수의직렬공무원 지급구분표(제2조제2항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면허소지자	월 500,000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신설></p>	<p>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 ----- ----- 제2호가목-----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영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p>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의견서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2-1439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변경(안) 열람 공고

우지동 34번지 일원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정비·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삼척시장

가. 주요 내용: 기반시설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소로3-270(도로) 폐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진출·입도로 활용 불필요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② 면적 증가: 5,220㎡ → 97,027.9㎡(증 91,807.9㎡)

나. 열람기간: 2022. 11. 25. ~ 2022. 12. 9. (15일간)

다. 열람장소: 삼척시청 도시과

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조서 및 도면: 열람 장소 비치

마. 열람 기간 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에 대하여 삼척시장(도시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 관련 기타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공고 제2022-1440호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삼척시장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인 만 65세 이상을 연령 제한 없이 전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2)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을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서 전체 연령으로 확대
- 나.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항)

3.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15일까지 작성하여 삼척시장(복지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2) 전화 : 033-570-3313

3) 팩스 : 033-570-3130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 / 공고 / 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65세 이상인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보훈명예수당 지급 및 예금계좌 등 변경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의2(수당 등 지급 대상자) 제7조의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u>만65세 이상인 사람</u>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 4. (생략)</p> <p>제8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u>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 ④ (생략)</p>	<p>제7조의2(수당 등 지급 대상자) ----- ----- ----- <u>사람</u>-----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8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u>보훈명예수당 지급 및 예금계과 등 변경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의견서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2-1442호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삼척시장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기준인 만 65세 이상을 연령 제한 없이 전체로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원대상을 만 65세 이상에서 전체 연령으로 확대
- 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 서식 개정에 관한 사항 (안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15일까지 작성하여 삼척시장(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 2) 전화 : 033-570-3313
 - 3) 팩스 : 033-570-3130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 / 공고 / 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만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배우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를 “배우자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 개정 2022. . .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

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등록번호		-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당지급 계과	금융기관명		계과번호 (예금주 성명)
	변경내용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1부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주민등록표등·초본 1부 4. 통장사본 1부 (※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초본(주민등록주소 확인) 2. 입금계과 확인정보(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과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를 한 경우 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번호 :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과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 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의 지원대상자는 법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지급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u>만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u></p>	<p>제3조(지원대상자) ----- ----- ----- ----- <u>참전유공자</u> ----- ----- <u>배우자로</u> -----.</p>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정안	검토의견서	
	수정안	검토사유